

2019. 12. 10. 보도 자료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12월 공개변론 안내

□ 헌법재판소는 오는 **12. 12.(목) 14:00** 대심판정에서 아래 사건에 대한 변론을 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 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청구인 (대리인)	이해관계인 (대리인)	비 고
1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분문 등 위헌확인	크○○ (법무법인 선정 외2)	법무부장관 (정부법무공단)	

붙임 : 관련사건 보도자료 1부 끝.

보 도 자 료

병역의무자의 국적이탈 기간을 제한하는 국적법 조항 등에 관한 사건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공 개 변 론]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12일(목) 14:00 대심판정에서, 2016. 10. 13. 접수된 2016헌마889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을 열 예정이다.

이 사건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일정한 시기로 제한하는 한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전 또는 현역 등 복무 종료,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도록 하는 국적법 및 국적이탈 신고 시 제출할 서류를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조항 등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변론과 참고인 진술을 들은 뒤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1999. 5. 15. 미국에서 미국 국적자인 부와 대한민국 국적자인 모 사이에 출생한 남성이다. 청구인은 미국 영역 내에서 태어나 출생과 동시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출생 당시에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이다.
-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12조 제1항 본문), 병역법 제8조에 따른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그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2조 제2항 본문).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은 국적선택기간 이내에 또는 위와 같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경우에 비로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국적이탈 신고 시 신고서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 등).
-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만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며(제8조), 병역법상 연령 표시는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의미한다(제2조 제2항).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청구인의 경우 2017년 3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만약 국적이탈을 원할 경우 위 기간 내에 신고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상기한 바와 같이 병역의무에서 벗어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다.
- 청구인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항 단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가 자신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등 주장을 하면서, 2016. 10. 13. 위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4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적법 시행규칙(2014. 6. 18. 법무부령 제817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라 하고,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청구인 주장 요지

- 심판대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절차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 이해관계인 법무부장관 의견요지

- 심판대상조항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내지 국적이탈의 자유를 제한하며,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에 제한이 초래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의 간접적·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 실무상 제외공관을 통하여 국외거주자들에 대하여 국적이탈에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출생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복수국적자에게 국가가 국적이탈 절차에 대해 개별 통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은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증명할 서류, 부 또는 모와 청구인의 관계

를 증명할 서류, 부와 모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의미함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주요 쟁점

-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국적이탈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심판대상 시행규칙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 참고인 의견요지

- 참고인 : 미국 Washington Law Firm, PLC and Chun & Associates, PLC
대표변호사 전종준(청구인 측)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상겸(이해관계인 측)
- 참고인 전종준의 의견요지
 -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 복수국적자가 예컨대 군 입대, 사관학교 입학, 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과 같이 국가안보나 공무수행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려 하는 경우, 복수국적으로 인하여 규범상 또는 사실상 불이익이 초래되며, 이는 당사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연령은 미성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모의 대리에 의해서만 국적이탈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는 국적이탈의 자유라는 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미국 동포사회에 대한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생과 동시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국적이탈과 관련하여, 약 72%의 응답자가 국외 거주자들은 대한민국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약 74%의 응답자가 대한민국 국적으로부터 이탈할 수 없어 겪는 불이익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음

○ 참고인 김상겸의 의견요지

- 국적 부여와 관련하여, 입법정책적으로는 출생지와 관계없이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부모 중 어느 한쪽만 한국인이더라도 대한민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의 그 자녀에 대하여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 청구인이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어 외국에서의 공직취임 등 측면에서 불이익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효과에 불과하며, 설사 제도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외국 정부·기관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므로,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